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66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동물생산업의 교배·출산 금지 월령 상한 설정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19.

다. 회 부 일 : 2024. 6.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배·출산 금지 월령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1호 및 제97조제4항제5호).

Ⅲ. 검토의견

1. 동물생산업의 교배·출산 금지 월령 상한 설정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교배·출산 금지 월령 하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월령 66개월 이상의 개·고양이에 대해서도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월령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 및 제9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생략)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 -----.
1.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1. ----- <u>미만 또는 66개월 이상</u>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 ③ (생략)	제9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④ -----

현행	개정안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영업자	5. ----- -----미만 또는 66개월 이상-----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반려동물의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 등 공장식 번식으로 인하여 동물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¹⁾ 동물의 생식능력이 다할 때까지 교배·출산을 반복하는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관련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기준 강화를 통하여 동물의 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반려동물 생산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월령 66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동물들이 보다 건강한 조건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1) 서울신문(2023. 9. 3.) 경기도 화성 ‘합법 개번식장’서 동물학대 받던 1400여마리 구조

첫째,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개·고양이의 임신 휴식기가 8개월 이상에서 10개월 이상으로 강화된²⁾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경우 동물생산업계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³⁾을 고려한 논의 및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둘째, 개정안은 출산 및 교배 월령 상한을 6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그 상한을 몇 개월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물복지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사육 동물의 교배·출산에 대한 상한 설정을 통해 동물복지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2)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영업자의 준수사항)] 2. 개별 준수사항

가. 동물생산업자

4)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3) (생산자 단체 입장) 출산 휴식기(10개월) 폐지하고, 모견 출산차수 제한(모견 1두가 12개월 이상 되는 시점부터 일정 회수의 출산 이후 은퇴견으로 분류되는 방식 등)으로 개선 등을 주장 중

현재 동물복지위원회 학대·영업 분과에서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개정안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27